

한국 민간경비원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상철* · 김태민**

< 목 차 >

- I. 서론
 - II. 한국 민간경비의 현황과 발전과정
 - III. 한국 민간경비원의 업무와 역할
 - IV. 한국 민간경비 교육훈련의 실태 및 문제점
 - V. 민간경비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선방안
 - VI. 결론 및 제언
- 참고문헌
ABSTRACT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급속한 사회의 발전과 산업화로 인한 각종 병리 현상이 범죄와 결부되어 사회현상으로 나타나고, 전통적 가치관의 붕괴와 높은 경제 성장의 악영향인 부의 편중화는 현대사회 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여 각종 범죄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범죄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03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의 5대 범죄는 497,066명에 달하고 있다. 과거 경제적 어려움이 주된 범행동기였다면 최근의 강력범죄는 유흥비 마련 또는 영상물에 의한 모방, 스트레스 해소 등으로 범행동기가 단순화되고, 범행수단에 있어서는 지능화·기동화의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사

* 용인대학교 경호학과 교수

** 경운대학교 경호학부 교수

이버경찰청, 2004).

한편 우리나라의 민간경비는 1976년 용역경비업법이 제정되어 제도화된 이후, 1989년 기계경비업무의 신설, 1995년 경비지도사제도 신설, 1999년 경비업법으로 법명 개정, 2001년 특수경비업무와 기계경비업무 추가 등 법·제도적 정비·보완으로 절적 향상을 꾀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적 뒷받침을 바탕으로 꾸준히 성장하여 치안 서비스 공급 주체인 경찰과 함께 치안 환경 변화 요인을 기준으로 한 상호 역할 분담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기본적인 목적인 사회적 재산을 보호하고 손실 예방의 임무를 다하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2004년 6월 30일 기준 경비업체 법인 수는 2,213개, 경비원은 110,231명으로 양적인 팽창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렇지만 한국의 민간경비는 여러 가지 질적 측면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거듭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소수의 경비업체들을 제외하고는 영세하여 업체의 규모와 여건에 따라 사업 영역이 제한되어 있고, 경비업 이외의 환경, 위생, 시설, 소독, 파견 등과 같은 겸업을 함으로써 경비업의 전문성을 저해하고 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 경비원들의 높은 이직률로 말미암아 내적인 전문성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더불어 민간경비의 자체 투자와 교육은 미비하고 법·제도적으로도 미완성된 단계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제반적인 환경들은 민간경비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크게 경비원 및 경비지도사의 교육적인 측면, 법·제도적인 측면, 사회 인식도 및 신뢰 회복 측면, 경비원의 전문성 측면, 시장의 구조적 측면, 관계기관과의 상호 협력적인 측면 등 질적인 측면의 문제점들로 요약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민간경비의 질적인 문제점들 중 경비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적인 측면에서 질적 연구방법으로 접근하였다. 현행 경비업법에 규정된 민간경비의 교육관련 조항들의 문제점들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중·대기업을 제외한 일선 경비업체에서 실질적으로 행하고 있는 형식적인 교육프로그램의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민간경비원들의 업무에 기초한 실무 중심적인 한국형 민간경비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는데 본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이 있다.

2. 연구의 방법 및 제한점

본 논문의 연구는 국내외의 학술지 및 연구물들과 참고서적 등과 같은 문헌자료를 수집·분석하여 고찰하였고, 인터넷을 통한 경비업체의 홍보자료들을 참고하였다. 그리고 실증적인 측면에서 실무경험을 기술적으로 제시하였으며, 경찰청 등 관련 기관·경비업체·협회의 실무담당자들의 의견들도 인터뷰하여 참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213개의 경비업체들 중 대부분의 경비업체들이 허가를 받아 경영하고 있는 시설경비업무로 연구의 범위 제한을 두었다.

또한 업무의 특성상 민간경비업체의 정보유출불가 사항과 대외 비밀 사항은 본 연구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다만, 민간경비의 순수 학문성이 있는 이론적 내용들은 포함하였다.

II. 한국 민간경비의 현황과 발전과정

1. 한국 민간경비의 현황

한국의 민간경비업은 1960년대 초 미8군 부대의 경비를 담당하면서 태동하여 경비법이 제정된 1976년부터 본격적으로 자리잡기 시작하였다. 법이 제정될 당시 불과 10개밖에 되지 않았던 경비업체가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 등의 각종 국제행사를 치르면서 급성장하여 2002년에는 전국 2,000여개의 경비업체에 10만여명의 경비원이 종사할 정도로 양적인 성장을 이루었고 질적인 면에서도 과거 사람 위주의 단순경비에서 첨단장비 및 기술을 활용하는 기계경비 분야로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급증하는 치안수요에 따라 이러한 성장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다양한 분야의 경비 영역 확대를 통해 민간경비의 새로운 장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사이버경찰청 2003경찰백서, 2004).

1) 경비업체 및 경비원 현황

2004년 6월 30일 기준 한국의 경비업체는 2,213개에 이르며, 경비원 수는 110,231명에

달하고 있다.

<표2-65> 민간경비 현황

구분	'93	'94	'95	'96	'97	'98
경비업체(개)	539	690	785	975	1,151	1,375
경비원(명)	37,607	40,223	44,720	52,489	62,419	52,343
구분	'99	'00	'01	'02	'03	2004.6.30
경비업체(개)	1,707	1,882	1,929	2,051	2,163	2,213
경비원(명)	71,481	81,618	97,117	107,963	104,872	110,231

자료 : 사이버경찰청, 경찰청 자료에 의거 필자 재작성.

註 : 2004년 6월 30일 기준임.

한편, 우리나라의 경비업체는 민간경비업을 다섯 가지 업종. 즉, 시설경비업무, 호송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기계경비업무, 특수경비업무로 구분하고 있는데 2004년 6월 30일 기준 허가업종별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2,588개 중 시설경비업무가 2,115개로 가장 많고, 신변보호업무가 245개, 기계경비업무가 147개, 호송경비업무가 51개, 마지막으로 특수경비업체가 30개 업체로 등록되었다.

<표2-66> 허가업무별 민간경비업체 현황

구 分	허가업무별 현황					
	계(개)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	특수경비
계	2,588	2,115	51	245	147	30

자료 : 경찰청 자료에 의거 필자 재작성.

註 : 2004년 6월 30일 기준임.

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2004년 6월 30일 기준 경비업체는 서울이 전체 2,213개의 44.9%인 993개로 가장 많고, 다음은 경기도가 11.8%인 261개로 나타났다. 이 현황을 살펴 보면 경비업체의 과반수이상인 60.3%가 수도권지역(서울, 경기, 인천)에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지역별 경비원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이 전체 110,231명 중 32.1%인 35,431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경기도가 18.5%인 20,418명으로 나타났다. 이 현황을 살펴보면 경비원 과반수 이상인 59.1%가 수도권지역에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2-67> 지역별 민간경비업체 및 경비원 현황

구 분	'01		'02		'03		2004.6.30		
	업체	경비 원	업체	경비 원	업체	경비 원	업체	경비 원	
	1,929	97,11 7	2,051	107,9 63	2,163	104,8 72	2,213	110,2 31	
지역 구분	서울	842	56,61 0	915	66,00 1	987	34,01 6	993	35,43 1
	부산	172	6,463	184	7,367	189	9,802	197	10,13 4
	대구	143	4,087	136	5,557	141	5,720	139	5,439
	인천	67	3,034	78	3,453	73	9,155	80	9,278
	울산	28	1,269	33	941	34	2,805	36	2,624
	경기	213	12,37 7	225	12,16 3	248	20,43 0	261	20,41 8
	강원	24	708	26	784	31	2,725	36	2,183
	충북	40	766	43	667	45	2,001	44	1,974
	충남	117	3,805	127	3,715	128	2,791	132	5,787
	전북	46	1,187	47	1,055	43	2,133	44	2,375
	전남	99	2,551	103	2,833	106	4,423	106	4,720
	경북	56	2,549	50	1,429	52	3,384	56	4,121
	경남	77	1,570	77	1,855	78	4,939	82	5,074
	제주	5	141	8	143	8	548	7	673

자료 : 사이버경찰청, 경찰청 자료에 의거 필자 재작성.

註 : 2004년 6월 30일 기준임.

2) 경비지도사 현황

또한 경비업의 건전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1997년부터 경비지도사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경비지도사에게는 경비원을 지도·감독·교육하는 업무가 주어지고 있다. 경비지도사 자격시험은 1997년·1999년·2001·2002·2003년 5회에 걸쳐 경비지도사 시험을 실시하였다. 2003년 말 기준 경비지도사 합격인원은 총 12,472명이다. 이를 경비지도사는 각 경비시설에 배치되어 민간경비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표2-68> 경비지도사 합격자 현황

구 분	계	1회 (1997)	2회 (1999)	3회 (2001)	4회 (2002)	5회 (2003)
계	12,472	2,398	7,875	634	796	769
일반경비지도사	11,336	2,161	7,205	553	734	683
기계경비지도사	1,136	237	670	81	62	86

자료 : 사이버경찰청, 산업인력공단 통계자료에 의거 필자 재작성.

註 : 2004년 6월 30일 기준임.

2. 한국 민간경비의 발전과정

경비업법은 산업시설·공공시설·사무소등 기타 경비를 요하는 시설물의 경비업을 할 수 있도록 경비업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경비업무의 실시에 적정을 기하려는 법률로서 경비업자,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활동을 규정한 가장 기본적인 법률이다(김두현, 2001).

그리므로 본 연구 II장에서는 민간경비의 법·제도적 발전과정측면에서 현행 경비업법의 제정과 개정 이유를 이론적 내용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용역경비업법의 제정

용역경비업법은 1976년 12월 31일 법률 제2946호로 제정되었다. 이 법은 산업시설·공공시설·사무소등 기타 경비를 요하는 시설물의 경비업을 할 수 있도록 용역경비업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용역경비업무의 실시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 법이다.

2) 경비업법의 개정 이유

(1) 1차 개정 [일부개정 1981.2.14 법률 제3372호]

용역경비원이 될 수 있는 자의 연령상한을 50세에서 55세로 연장하여 경비원의 사기를 양양하려 하였다.

(2) 2차 개정 [일부개정 1983.12.30 법률 제3678호]

용역경비업자의 불필요한 신고의무를 완화하고, 벌칙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 하였다. 주요 내용은 용역경비업자가 경비원을 채용 또는 해임할 때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하던 것을 폐지하였고, 무허가영업행위에 대한 벌칙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조정하였으며, 휴업신고의무위반 등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과태료로 완화하였다.

(3) 3차 개정 [일부개정 1989.12.27 법률 제4148호]

용역경비업을 건전하게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경비원의 권익을 증진하고, 경비원의 자격연령을 연장하며, 용역경비업자의 손해배상보장제도를 개선하려 하였다. 주요 내용은 용역경비원 연령제한을 18세미만이거나 59세 이상으로 완화하였고, 용역경비협회는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용역경비업자는 손해배상을 위해 현금 등을 공탁하거나 이행보증보험계약을 보험회사와 체결하는 대신에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4차 개정 [일부개정 1991.5.31 법률 제4369호]

경찰의 민주적인 관리·운영과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위하여 경찰의 기본조직 및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경찰법의 제정으로 용역경비업법 중 일부 내용을 개정하였다. 경찰법의 부칙 중 변경된 조항은 용역경비업법 본문 중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하고, 또한 "내무부장관"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하고, "도지사"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하였다.

(5) 5차 개정 [일부개정 1995.12.30 법률 제5124호]

사설경비업을 용역경비업의 한 분야로 흡수하고, 경비원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비원의 지도·감독 및 교육을 전담하는 경비지도사제도를 신설하며, 용역경비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현행법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 하였다. 주요 내용은 신변보호업무를 용역경비업의 한 분야로 추가, 허가권한을 용역경비업을 하고자 하는 법인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이양, 직무상 알게 된 경비대상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경비지도사제도를 신설하였다.

(6) 6차 개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

행정절차법이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행정절차법과 개별 법률에 중복규정되어 있는 행정절차관련규정을 삭제하고, 개별 법률의 다양한 의견청취유형을 행정절차법에 맞도록 정비하며, 일정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는 처분을 명확히 개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행정절차법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려 하였다.

(7) 7차 개정 [일부개정 1999.3.31 법률 제5940호]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경비지도사의 자격 등과 관련된 규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설립과 가입이 강제되던 용역경비협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용역경비업과 관련된 과도한 규제를 개선·완화하려 하였다.

(8) 8차 개정 [전문개정 2001.4.7 법률 제06467호]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경비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경비업의 종류에 특수경비업무를 추가하고, 기계경비산업이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기계경비업무의 신고제를 허가제로 변경하는 한편, 기계경비업자의 신속대응조치 의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 하였다.

(9) 9차 개정 [일부개정 2002.12.18 법률 제06787호]

경비업자의 대부분이 경비업 외에 다른 업무를 겸업하고 있는 경비업계의 현 실정에 맞추어 이 법에 의한 경비업 외의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경비업자의 겸업금지의무를 특수경비업자로 한정함으로써 경비업자의 영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경비분야의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려 하였다.

III. 한국 민간경비원의 업무와 역할

1. 민간경비원의 업무

민간경비원은 해당 업무별로 업무의 내용과 임무수행 방법이 달라지게 된다. 여기서는 시설경비업무 중심으로 민간경비원의 업무에 관해 살펴본다.

1) 배치 포스트(POST) 업무 수행

민간경비원은 각 배치 포스트(POST)별로 주요 임무들을 부여받아, 그에 대한 인원구성 및 근무형태를 구성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경비원의 배치 포스트는 경비대상 블록(Block) 및 구역을 설정하는 경비 업무의 기본 단위이다. 포스트란 인력경비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각 경비대상 구역이나 임무별로 그 명칭을 붙이고, 수량이나 시간 그리고 배치장소를 나타내는 등의 관리단위를 말한다.

포스트의 종류는 각 사업장의 업종에 따라 경비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사업장별로 상이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넓은 의미에서 구분을 한다면, 동초(動哨)포스트, 고정(固定)포스트, 순회(巡迴)포스트로 구분 할 수 있다(김태민, 2002).

통상적인 배치구역의 주요 임무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첫 번째, 중앙통제실 및 보안실에서는 경비와 관련된 모든 상황을 접수하고 전파하고, 내방객에 대해서는 항상 친절하고 세련된 언어를 구사해 안내하며, 물품 반출입에 관한 임무가 있을 경우 통제 및 반입증을 발급한다. 그리고 경비 관리자의 명령에 복종하며 지시된 임무를 수행하고, 비상상황발생시 대응방법에 관해 지시하고 통제하는 것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두 번째, 출입구 포스트에서는 출입 인원 및 출입차량의 통제를 한다. 아울러 물품의 반출입을 통제하고, 각종 상황에 정확한 대응을 한다.

세 번째, 로비(Lobby) 구역에서는 내방객에 대한 응대 및 안내를 수행하고, 무용자 및 거동수상자를 색출 및 통제를 하며, 전화가 있을 경우 전화 응대한다. 그리고 출입문 개·폐 서비스(Door Service)를 한다.

네 번째, 외부 및 외곽 구역에서는 통상 경계 근무를 수행한다. 불법 유인물의 부착 확인 및 처리하고, 경비대상시설물의 이상 유무를 점검한다. 아울러 순회·순찰을 통해 점검 및 보수를 실시하고 각종 상황에 대처한다.

2) 순회·순찰 업무 수행

순회란 사전적 의미로서는 여러 곳을 차례로 돌아다니는 것을 의미한다. 경비 업무에서의 순회란 경비대상시설의 내·외부를 경비계획서에 기초하여 불안전한 요소나 폭발물 등의 각종 유해물을 탐지하여 제거하는 안전점검, 각종 시설물의 안전상태를 검사하는 안전검사, 안전점검 및 안전검사가 이루어진 상태를 유지하는 안전유지 업무를 제공하는 것이다.

순찰이란 사전적 의미로서 순회하여 살피는 활동을 말한다. 경비 업무에서의 순찰이란 관리자가 사업장 내·외의 근무지역을 순회하면서 근무자의 근무상태를 확인하고 근무자를 격려하여 사기양양은 물론 근무의 품질을 높이고, 아울러 불안전한 요소들을 사전에 발견하여 제거하기 위한 활동이다.

순회·순찰의 종류는 크게 노선에 의한 분류, 목적에 의한 분류, 그리고 구역에 의한 분류로 구분할 수 있다. 노선에 의한 분류는 정기 순회·순찰, 부정기 순회·순찰, 중요지점 순회·순찰로 구분하고, 목적에 의한 순회·순찰 방법은 예방 순회·순찰과 검색 순회·순찰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구역에 의한 분류는 내부 순회·순찰과 외부 순회·순찰로 구분 할 수 있다.

3) 출입관리 업무 수행

출입관리란 경비대상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출입하는 인원과 물건의 반출입을 확인·점검하고 관리하여 범죄나 사고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안전제공의 수단이라 할 수 있다.

출입관리 지역의 구분은 통제구역, 제한구역, 제한지역으로 구분하여 운용하는데, 통제구역이란 연구실, 중요 비밀 보관실 등 비인가자의 출입 금지가 요구되는 보안상 극히 중요한 구역을 말한다. 제한구역이란 안내자의 동행이 요구되는 보안구역으로서 통상 시설 내부를 말한다. 제한지역이란 외래인의 출입에 감시가 요구되는 지역으로서 통상 울타리

내부를 말한다.

4) 각종 사건·사고 발생시 대처 업무 수행

경비원은 경비대상시설의 안전을 위해 경비 업무 지침서에 의한 정위치 근무 및 순회·순찰을 통해 범죄의 사전 예방을 도모하여야 한다. 그리고 각종 유형별로 비상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1차적 신속 대응을 하고, 자체적으로 처리 가능한 상황일 경우에는 중앙통제실 및 보안실의 지시에 따라 상황을 수습하여야 한다. 그러나 자체적으로 처리가 불가능한 대규모 긴급 상황 발생시에는 등급별 분류기준에 의하여 공경비 및 지역자율방범대와 연계하여 비상 상황에 신속히 대응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시에 근무에 충실해야 함은 물론 사전에 예상되는 비상상황의 사안별·등급별로 A급, B급, C급, D급 등으로 구분하여 비상상황대책방안을 구축해 두어야 한다.

그리고 예상되는 비상상황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조치요령을 습득해 두어야만 한다. 유형별 분류는 인적 요소에 의한 사건·사고 대응, 화재 사고 대응, 천재지변 발생시 대응, 소요 사태 및 집단사태 발생시 대응, 구급환자 발생시 대응 등으로 세세분류하여 지침서를 작성하고 비상상황 발생시 가장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한다.

5) 의견 및 신변보호 업무 수행

시설경비원은 업무 제공 중 중대한 테러의 위협이나 혹은 계약처의 요청에 의해서 의견 및 신변보호작용 즉 경호활동을 수행 및 지원하기도 한다. 시설경비업무의 특성상 경비대상시설의 위험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내부의 인적요소들에 대한 신변보호의 역할도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테러와 같은 중대한 위협이 있을 경우에는 임직원은 물론 입주자들의 신변보호 요청이 수반될 수도 있다(김태민, 1999).

2. 민간경비원의 역할

시설경비업무란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경비대상시설)에서의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로 정의된다. 그러므로 시설경비업

무에서 민간경비원의 주된 역할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첫째, 시설물에 대한 물리적 보호

둘째, 시설물에 대한 접근·출입 통제 및 감시

셋째, 차량 등의 교통 통제

넷째, 일반적인 회사의 규칙준수 이행 등이다.

경비원은 시설물 내에서 방문객들을 목적지까지 안내하거나 수행하기도 하고 아울러 정보원으로서의 역할도 함께 병행해야 한다. 그러나 경비원의 가장 주된 업무는 시설물 내 인적, 물적 요소에 대한 안전과 보호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경비 업무의 수행에 있어서 이들의 업무가 범죄문제에 직접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근무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한 책임을 질뿐만 아니라 고객의 재산을 보호해야 할 책임을 진다(이윤근, 2002).

시설경비에 있어서 시설경비원에 대한 책임지역이 구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책임지역을 가까운 지역으로부터 먼 지역으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 가까운 인접을 근접지역이라 하며, 근접지역은 경비원이 있는 가까운 시야의 지역으로 하며, 중간지역은 건물이 있는 시설물의 올타리 경계선 이내로 한다. 또한 외곽지역은 중간지역의 범위를 벗어난 지역으로 구분하여 근무자인 경비원이 근무시 책임지역을 명시하여 근무에 임하되 명확한 책임으로 근무할 수 있는 지역을 명시하여야 한다(김순열, 1999).

IV. 한국 민간경비 교육훈련의 실태 및 문제점

1. 한국 민간경비 교육훈련의 실태

현행 경비업법상 민간경비 교육훈련 제도는 크게 경비원과, 경비지도사에 대한 교육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1) 경비원에 대한 교육훈련 제도

경비업자는 경비 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경비원으로 하여금 교육을 받게 하고 있는데 신임교육과 직무교육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경비원이라 함은 경비업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하 "경비업자"라 한다)이 채용한 고용인으로서 일반경비원과 특수경비원으로 구분된다.

일반경비원은 시설경비·호송경비·신변보호·기계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특수경비원은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일반경비원의 경우에 일반경비업자는 경비원을 채용한 때에는 일반경비업자의 부담으로 근무 배치 후 1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15시간 이상의 신임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그리고 소속 일반경비원에 대하여 매월 4시간 이상의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특수경비원의 경우에 특수경비업자는 특수경비원을 채용한 때에는 특수경비업자의 부담으로 근무 배치 전에 80시간 이상의 특수경비원신임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또한 소속 특수경비원에 대하여 매월 6시간 이상의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표4-1> 민간경비원의 법적 교육 이수 시간

구 분	신임교육		직무교육
	시간	시한	
일반경비원	15시간 이상	배치 후 1월 경과 전	4시간 이상/월
특수경비원	80시간 이상	배치 전	6시간 이상/월

자료 : 경비업법·시행령·시행규칙에 의거 필자 재작성.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의 과목은 학과교육(헌법 및 형사법, 경비업법), 실무교육(시설방호, 불심검문요령, 소방), 무술교육(기본훈련 및 호신술), 기타(입교식·평가·수료식)로 구성되어 있다.

<표4-2>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의 과목 및 시간

구 분	과 목	시 간
학과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헌법 및 형사법(인권, 경비관련범죄 및 현행범체포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다) • 경비업법(청원경찰법을 포함한다) 	2 2
실무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방호 • 불심검문요령 • 소방 	2 2 2
무술교육	• 기본훈련 및 호신술	2
기 타	• 입교식·평가·수료식 등	3
계		15

자료 : 경비업법시행규칙 [별표2] ; 제12조 제1항 관련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의 과목은 정신교육, 학과교육(현법 및 형사법, 경비업법, 민간경비론), 실무교육(기계경비실무, 경찰관직무집행법, 시설경비, 소방, 정보보호, 보안업무, 민방공, 총기조작, 총검술, 사격, 예절), 무술교육(체포술 및 호신술), 기타(입교식·평가·수료식)로 구성되어 있다.

<표4-3>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의 과목 및 시간

구 분	과 목	시 간
정신교육	○ 정 신 교 육	4
학과교육	○ 현법 및 형사법(인권, 경비관련범죄 및 현행범체포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다) ○ 경비업법(청원경찰법을 포함한다) ○ 민간경비론	4 8 2
실무교육	○ 기계경비실무 ○ 경찰관직무집행법(불심검문을 포함한다) ○ 시설경비(야간경비를 포함한다) ○ 소 방 ○ 정 보 보 호 ○ 보 안 업 무 ○ 민 방 공(화생방을 포함한다) ○ 총 기 조 작 ○ 총 검 술 ○ 사 격 ○ 예 절	4 4 6 4 2 4 6 2 4 12 2
무술교육	• 체포술 및 호신술	2
기 타	• 입교식·평가·수료식 등	4
계		80

자료 : 경비업법시행규칙 [별표4] ; 제15조 제1항 관련

2) 경비지도사에 대한 교육훈련 제도

경비지도사는 경비원을 지도·감독 및 교육하는 자를 말한다. 경비지도사는 시설경비·호송경비·신변보호·기계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경비원을 지도·감독 및 교육하는 일반경비지도사와 기계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경비원을 지도·감독 및 교육하는 기계경비지도사로 구분된다.

경비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지도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선임된 경비지도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첫째, 경비원의 지도·감독·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실시 및 그 기록의 유지
둘째, 경비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에 대한 순회점검 및 감독

셋째, 경찰기관 및 소방기관과의 연락방법에 대한 지도
 넷째, 기계경비업무를 위한 기계장치의 운용·감독(기계경비지도사의 경우)
 다섯째, 오경보방지 등을 위한 기기관리의 감독(기계경비지도사의 경우)
 경비지도사는 경비업법 제10조제1항 각호의 1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경찰청장이 시행하는 경비지도사시험에 합격하고, 교육을 받는 자의 부담으로 44시간의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 경비지도사 자격증을 교부한다.

<표4-4> 경비지도사 교육의 과목과 시간

구 분 (교육시간)	과 목		시간
공통 교육 (20시간)	○ 경비업법 ○ 청원경찰법 ○ 법학개론 ○ 경비실기(봉술 및 호신술) ○ 교육기법 ○ 입교식·평가·수료식		4 2 2 4 4 4
실습교육 (24시간)	일반경비 지 도 사	○ 시설경비 ○ 호송경비 ○ 신변보호 ○ 기계경비개론 ○ 일반경비현장실습	5 5 5 2 7
	기계경비 지 도 사	○ 기계경비운용관리 ○ 기계경비기획및설계 ○ 인력경비개론 ○ 기계경비현장실습	7 7 3 7
계			44

자료 : 경비업법시행규칙 [별표1] ; 제9조 제1항 관련

2. 한국 민간경비 교육훈련의 문제점

1) 낮은 수준의 법적 교육 시간

경비의 전문성을 위해서는 경비원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이 요구된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현행 경비업법상 경비원에 대한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은 낮은 수준의 교육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경비원의 경우 신임교육은 배치 후 1개월 내에 15시간 이상의 교육을, 직무교육은 월 4시간 이상의 교육만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2) 인력경비 위주의 교육프로그램 설정

국내 민간경비업무의 영역은 시설경비·호송경비·신변보호·기계경비·특수경비 업무의 다섯 가지 업무로 분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비업법에는 일반경비원과 특수경비원의 인력경비 교육프로그램으로만 구성되어있어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교육 프로그램의 구성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3) 경비지도사 제도 및 교육프로그램의 미비

경비지도사는 경비원을 지도·감독·교육하는 자로서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교육의 이수 후 경비원을 지도한다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따르는 것이 현실이다. 더불어 경비지도사제도 자체적인 내용상의 여러 문제점들은 앞으로도 개선되어야 할 과제이다.

4) 전문교육기관의 부족

국내 경비전문교육기관의 부족으로 소수업체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경비업자들은 한국경비협회에서 신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법적 신임교육 15시간만을 교육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민간경비산업을 총괄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전문연구기관이 없는 실정이다.

5) 형식적인 교육의 시행

경비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은 상위 몇 개의 경비업체를 제외하고 영세성 등의 환경적 요인에 따라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더불어 그 교육은 형식적 교육에 그치고 있다.

신임교육의 경우 저품질의 경비업체에서는 결원이 발생할 경우 대치경비원을 배치하기 위해서 간단한 면접 후 채용하고, 몇 가지의 경비수칙만을 교육한 후 현장에 배치되고 있는 형편이다. 더군다나 직무교육 또한 형식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경비지도사의 미선임으로 인해 경비원의 지도·감독·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V. 민간경비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선방안

1.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기획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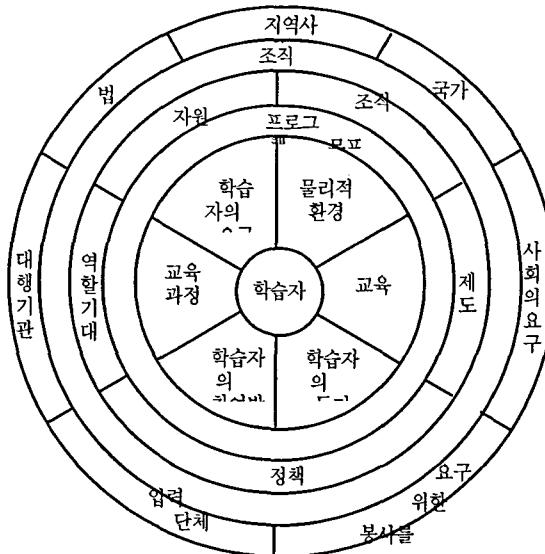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형식들이 개발되어 왔으나, 본 연구에서는 선형적 접근, 비선형적 접근, 통합적 접근으로 분류하여 제시한다.

선형 모델(Linear model)은 프로그램 기획을 위한 접근 방법 중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가장 전통적인 기법이다. 한 단계가 마무리된 후에 비로소 다음 단계에서 수행될 절차가 연속적으로 진행되는 기법이다.

비선형 모델(Nonlinear model)은 선형 모델이 각 단계에 하나의 절차만이 수행되는 것에 비해, 같은 시간에 몇 개의 절차가 동시에 이루어져 시간상의 제약을 받지 않으며, 각 단계가 계속적으로 순환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시간과 자원할당에 의해 융통성을 보다 많이 부여받게 되며 프로그램 평가가 이 접근의 중심 핵심이 되어 각 단계마다 적절한 평가가 되풀이되고 피드백되는 기법이다.

통합적 접근방법(Integrated approaches)은 프로그램 기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접근 방법이 충체적(Holistic)이고 분석적이기 때문에 기획과정이 복잡하고 기획 참가자의 전문적인 능력을 필요로 하지만, 여타 접근 방법에 비해 기획오차(Planning errors)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김진화 · 정지웅, 2000).

본 연구에서는 학문적 내용은 물론 연구자의 실무 경험을 토대로 한 전문적 이론과 경험으로 통합적 접근방법의 프로그램 기획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림5-1] 프로그램 기획의 통합적 접근

출처 : Kowalski, T. J.(1988). *The Organization and Planning of Adult Education*. New York: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2.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방향

교육의 개념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실은 Patterson(1979)이 지적한 대로 교육이 의도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활동(Purposive activity)이라는 점이다. 의도적인 활동은 행위의 주체가 특정 목표를 가지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전에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 실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전준비 내용이 목표의 방향성과 일치되어야 한다는 측면을 강조한다(김진화·정지웅, 2000).

경비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부합되는 요소들이 산재해 있지만, 우선적으로는 멀리 내다볼 줄 아는 교육정책이 필요하다 하겠다.

경비원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경비업무의 전문화를 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비원에 대한 높은 교육과 훈련이 이루어져야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구체적으로는 체계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통하여 경비조직 구성원의 일반적 소양과 경비부문의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

이러한 교육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비원에 대한 신임교육, 직무교육, 보수교육들이 선행되어야 하고 교육의 강도도 높아져야만 한다. 또한 이를 위해서 우수한 교관의 확보, 경비전문교육시설과 경비전문학교의 설립, 교과과정의 개선, 경비지도사제도의 개선과 활성화 방안들이 뒷받침되어야만 한다.

민간경비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경비업의 5개 업무(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 특수경비)별로 그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하여 과목과 시간을 재정비해야 한다. 또한 이것은 인력경비위주의 교육으로 구성된 현행 경비업법의 개정도 포함한다.

둘째, 업무에 비례한 실무중심적인 교육프로그램 및 과목의 구성이 요구된다. 이론적이고 학문적인 내용을 탈피하여 실무 중심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져야만 한다. 또한 민간경비업무에 있어서 업무의 영역은 관리·행정부서, 영업부서, 실무부서(SE, SG, 경호, 운영, 기술, 관제, CS, CE) 등으로 편성되어지는데 각 부서마다, 각 업무마다 그 업무에 적합한 교육프로그램을 편성하여 실시해야 할 것이다.

셋째, 높은 수준의 법적·실질적 교육시간으로 재정비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일반경비원의 신임교육에서 실질적으로 15시간의 교육을 이수하고 민간경비업무를 이해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교육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경비지도사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교육훈련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경비지도사가 경비원을 지도·감독·교육하고 있는 바, 경비지도사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재정비하고, 아울러 경비지도사 제도를 강화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경비지도사로서의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44시간(공통교육 20시간, 실습교육 24시간)의 교육을 이수한 후 경비원을 지도한다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따르는 것이 현실이다. 실질적으로 업체의 현장에서는 경비지도사 보다 오히려 경비원들이 더 많은 지식과 실무경험을 더 가지고 있는 사례들이 많다. 그러므로 경비지도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의 구성과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다섯째, 해당업무만의 종합적인 교육프로그램의 구성이 요구된다.

이것은 경비원에서 관리자까지, 신임교육에서 직무교육, 보수교육까지의 종합적인 교육프로그램의 구상과 실현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업무량이 많고 다기능화 된 현대의 경비 전문화를 위해서는 종합적인 교육프로그램의

구성과 실현이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다.

3.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구성 내용

프로그램은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점에서 논의된다. 거시적 관점에서 프로그램은 조직에서 제공하는 모든 형태의 학습활동을 말하는 종합 프로그램이다. 미시적 관점에서 프로그램은 특정 내용을 학습하기 위한 각각의 개별 학습과정의 설계이다.

프로그램은 넓은 의미에서 모든 학습활동을 지칭한다. 학습은 단지 정해진 장소에서 한정해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학습주체가 존재하는 곳이면 어디서든 이루어진다. 학습이 수행되는 지침이나 청사진이 프로그램이다.

버너(Verner, 1964)는 프로그램이란 “정해진 기간에 특정한 학습목적을 달성하도록 고안된 학습경험”이라고 정의했다. 보일(Boyle, 1981)은 “다양한 기관들의 모든 활동을 충칭하는 것”으로 프로그램을 정의했다. 코왈스키(Kowalski, 1988)는 프로그램을 “조직적, 의도적인 학습활동의 설계이며, 환경, 조직, 프로그램, 학습자간의 상호작용”이라고 정의했다. 이들의 정의에서 드러나듯, 프로그램은 행동과정, 교육과정, 코스 혹은 목적 등 의 용어를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다(기영화, 2001).

민간경비 교육훈련의 프로그램 구성은 크게 신임교육, 직무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그 외에 관리자 교육, 서비스 향상 교육, 자질향상 교육, 실무 교육, 전문가 교육 등의 자체적인 보수교육과 직업능력향상교육 등 거시적 관점에서 종합적인 교육프로그램을 편성하여 실시해야 할 것이다.

4. 교육훈련 프로그램 기획 모델 설정

민간경비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선은 해당 업무의 실질적인 실무중심형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

그리고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경비원을 중심으로 그들과 관련된 다양한 요인, 즉 경비원의 요구, 물리적 환경, 학습자의 동기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그 프로그램은 경비 조직의 목표와 자원, 정책 등도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통합적 접근방법의 프로그램 기획 모델로 구성되어야 하는데 다음은 시설경비업무를 중심으로 한 통합적 민간경비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모델이다.

1) 신임 공통 교육훈련 및 내용

신임 공통 교육훈련은 경비원이 채용되어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민간경비업무를 포괄적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교육훈련으로 구성되어져야 하는데 그 내용들은 경비 대상시설의 설립 배경에서 관리 목표까지, 해당 경비업체에 대한 기본 지식, 시큐리티 리스크, 경비보안 시스템, 고객만족, 조직강화, 체력훈련 및 무술, 자기계발, 시큐리티 기본 교육, 관련법령, 사건·사고, 위험물 및 위험인물 식별 등으로 구성되어져야 할 것이다.

<표5-1> 신임 공통 교육훈련 및 내용

구분	교육의 세부 내용
사업장(경비대상시설)	설립 배경
	시설 개요 및 현황
	VISION
	경비대상시설의 특징
	대상입지 및 유치시설 현황
	동일 경비대상시설의 현황
	경비대상시설 사업의 일반사항
	사용 용어 정리
	관리 목표
회사(해당 경비업체)	해당 경비업체의 개요 및 현황
	CEO 경영방침
	사업 영역 및 분야
시큐리티 리스크 (Security Risk)	Security Risk
	일반적 위협환경
	운영적 위협환경
	기타 위협환경
	대응 방안
	비상대처 방법
	위기관리 프로그램
경비보안 시스템	Security System
	장구, 장비 사용
	시큐리티 운영
	비상사태
	방재 시스템
	보안 및 정보보호

고객만족	Service Mind
	Image Making
	고객 응대
	일반 예절
	장애인 및 노약자/환자 서비스
	응급 구조 및 구급법
조직강화	의전
	Team Building
	인성 교육
	봉사 활동
체력훈련·무술	부정 방지
	체력 훈련
	호신술
자기계발	기초 안전 무술
	기초·실무 어학
	기초·실무 전산
시큐리티 기본 교육	보람있는 직장 생활
	민간경비론
	경비업법
	법학개론
	소방학
	경호학
	범죄학
	기계경비개론 및 기계경비기획 및 설계
시큐리티 관련 법령	테러 및 테러리즘
	경비업법
	청원경찰법
	경찰법, 경찰관직무집행법
사건·사고 사례	형법 및 형사소송법
	보안 사고
	침입 사고
	화재 사고
	안전 사고
위험물·위험인물 식별	고객 클레임
	무기류
	폭발물
	생화학 무기
	밀수
	위험인물 식별

2) 실무 교육훈련 및 내용

민간경비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구성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해당 업무의 실질적인 실무중심형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것이다. 통합적 접근방법의 프로그램 기

획 모델로 구성되어야 하는데 실무 교육훈련은 민간경비원의 주요업무를 중심으로 검문·검색, 순회·순찰, 출입관리 및 POST 실무, 중앙통제실 업무 등으로 구성되어져야 할 것이다.

<표5-2> 실무 교육훈련 및 내용

구분	교육의 세부 내용
검문·검색 실무	검문·검색 시스템
	검문·검색 장비 및 기능
	검색요원 및 검색전
	검문·검색 방법
순회·순찰 실무	비상사태에 대한 Module화
	순회·순찰 장비 및 기능
	순회·순찰 방법
	사업 영역 및 분야
출입관리 및 POST 실무	비상사태에 대한 Module화
	POST 근무 방법
	출입문 근무 방법
	출입통제 시스템 및 기능
	외곽침입감시시스템
중앙통제실 실무	경비보안 중앙통제실 시스템
	시스템의 구성
	중앙통제실 운영 방법
	출입·감시 관리 시스템
	방범·방재시스템

3) 관리자 교육훈련 및 내용

관리자 교육훈련은 리더로서의 대인관계 및 관리 역량을 높이고 민간경비 업무 성과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자 관리자 기본교육과 실무교육으로 구분하여 구성해야 할 것이다.

<표5-3> 관리자 교육훈련 및 내용

구분	교육의 세부 내용
관리자 양성 기본교육	경비대상시설 개요 및 현황
	경비보안 운영 기법
	고객만족
	설비관리 운영기술(설비/전기/방재재어)
	경비보안 관리 실무

관리자 양성 실무교육	비상상황 대처 능력 개발
	노사관리 실무
	Security Planning
	경비계획서 작성 기법
	업무지침서(Manual) 작성 기법
	관리자 능력 개발
	조직 운영 및 조직관리
	강사양성
	위기관리
	리더십

4) 서비스 교육훈련 및 내용

최근에는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으로 말미암아 민간경비원에 대한 서비스 교육훈련이 많은 비중으로 요구되어지고 있다. 서비스교육은 크게는 CS경영에서부터 서비스강사에 대한 경력 개발 및 관리까지도 포함되어져야 할 것이다.

<표5-4> 서비스 교육훈련 및 내용

구분	교육의 세부 내용
시큐리티 서비스 교육	CS경영
	Professional image training
	Basic manner
	Business manner
	고객 유형별 분류
	유형별 서비스 응대 방안
	서비스 교육 지도 방법 / 현장 지도 기법
	서비스리더십/우수 서비스기업 벤치마킹
	전문 강사의 경력 개발 및 관리

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민간경비의 질적인 문제점을 중 경비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적인 측면에서, 질적인 연구방법으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현행 경비업법에 규정된 민간경비의 교육관련 조항들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민간경비원들의 업무에 기초한 실무 중심적인 한국형 민간경비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에 관해 연구하였다.

민간경비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구성은 해당 업무의 실질적인 실무중심형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 또한 통합적 접근방법의 프로그램 기획 모델로 구성되어야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시설경비업무를 중심으로 한 민간경비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모델과 내용의 예시를 들었다.

민간경비원의 주요업무를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한다면 POST업무 수행, 순회·순찰, 출입관리, 사건·사고 대응이라 할 수 있다.

민간경비원은 각 배치 포스트(POST)별로 주요 임무들을 부여받아, 그에 대한 인원구성 및 근무형태를 구성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그리고 경비대상시설의 내·외부를 경비계획서에 기초하여 불안전한 요소나 폭발물 등의 각종 유해물을 탐지하여 제거하는 안전점검, 각종 시설물의 안전상태를 검사하는 안전검사, 안전점검 및 안전검사가 이루어진 상태를 유지하는 안전유지 업무를 제공하는 순회·순찰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경비대상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출입하는 인원과 물건의 반출입을 확인·점검하고 관리하여 범죄나 사고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안전제공의 수단인 출입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각종 사건·사고 발생시 대처 업무 수행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민간경비 업무에 준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으로서 신임 공통 교육훈련, 실무 교육훈련, 관리자 교육훈련, 서비스 교육훈련 프로그램으로 분류하여 교육 내용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적으로 민간경비업무를 위한 필요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시하였으므로 현행 경비업법상 교육관련 교과목과 시간 등의 개정 방안에 대해서는 추후 관련 업계, 학계, 기관들과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하여 법개정에 적용을 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 고 문 헌

- 기영화(2001). 「평생교육 프로그램개발」. 서울: 학지사.
- 김두현(2001). 「경호경비법」. 서울: 백산출판사.
- 김두현 · 김정현(2002). 「민간경비론」. 서울: 백산출판사.
- 김수동 · 공병호(1999). 「교육사 · 교육철학」. 서울: 양서원.
- 김진화 · 정지웅(2000). 「사회체육 프로그램개발의 이론과실제」. 서울: 교육과학사.
- 신중식 · 강영삼(1996). 「교육행정학 및 교육경영」. 서울: 교육출판사.
- 이영남(2001). 「경비지도사 민간경비론」. 서울: 한국고시회.
- 이윤근(2002). 「경비지도사 민간경비론」. 서울: 엑스퍼트.
- 이재상(1998). 「형사소송법」. 서울: 박영사.
- Richard Chang. 이상욱 외 역(1997).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 서울: 21세기
북스
- D. F. Walker & J. F. Soltis. 허숙 역(1999). 「교육과정과 목적」. 서울: 교육과학사
- 강길훈(2000). 경비원의 교육훈련체제에 대한 경비업자의 의식수준에 관한 고찰. 「인
문사회과학연구」 제4호: 185-214
- 김태민(2002). 「민간경비 업무 수행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연구」. 용인대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_____(2003). 기계경비 대처요원의 임무수행 실태 및 발전방안. 제10회 한국경호경비
학술세미나 논문집: 65-99
- 김태민 · 권창기(2003). 시설경비업무 수행 방법에 관한 고찰. 「코리아스포츠리서치」
제14권 6호: 557-568
- 박병식(2001). 개정 경비업법의 문제점과 향후 입법대책. 「인문사회논총」 제7호:
77-104
- 이상철 · 김태민(2002). 민간경비산업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코리아스포츠리서치」
제13권 제5호: 53-67
- _____(2003). 민간경비업체의 업무 수행 절차 및 모델 설정에 관한 연구.
「경호경비연구」 제6호: 47-65

- 정진환(2002). 개정 경비업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한국경비협회보」 월보25호.
- Kowalski, T. J.(1988). *The Organization and Planning of Adult Education*. New York: State University of New Yo>g Press.
- Robert R.J. Gallati(1983). *Introduction to Private Security*. Prentice - Hall, Inc.
- Rothwell, W. J. & H. J. Sreld(1992). *Professional Human Resource Development Roles and Competencies*, Amherst, Massachusetts: HRD Press.
- Walter M. Strobl(1978). *Crime Prevention Through Physical Security*. Marcel Dekker, Inc.
- Young, K. M.(1977). "Educational Planning", In H. j. Burbach and L. E. Decker(ed.), *Planning and assessment in community education*, Michigan: Pendell publishing company, pp.29-38.
- 인터넷 사이트(<http://www.moleg.go.kr>, 2004). 법제처.
- 인터넷 사이트(<http://www.police.go.kr>, 2004). 사이버 경찰청.
- 인터넷 사이트(<http://www.s-tec.co.kr>, 2004). 에스텍시스템.
- 인터넷 사이트(<http://www.kotss.com>, 2004). 코트스.
- 인터넷 사이트(<http://www.ksan.or.kr>, 2004). 한국경비협회.

ABSTRACT

Study about development of education & training program for Private Security guard in Korea

Lee, Sang Chul · Kim, Tea Min

With regard to problems related to qualification of Private Security, this study is qualitatively to develop education & training program from the viewpoint of education for the purpose of checking professionalism of Security guard.

Offering the solutions for improvement by analyzing problems of articles related to training for Private Security guard prescribed in existing 'Law of Guarding', I made studies of development of practical affairs-centered education & training program for Private Security guard on the basis of Private Security guard' duties.

Education & training program for Private Security guard must be made up of practical affairs-centered one related to concrete duties.

Also because it needs to be made on the basis of a model planned for the program with combined method, this study gave examples of model and contents of education & training program based on duties of Facilities Security.

Main duties of Private Security guard can be divided into four duties; duties on their own posts, patrolling, control of going in and out, dealing with accidents and so on.

Private Security guard are given main duties by each post, and after adjusting conditions according to personnel organization, they perform their own duties.

As education & training program based on Private Security guard' duties, common education & training program for the new-appointed, practical affairs-centered education & training program, education & training program for superintendents, service education & training program and so on are provided.